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조례안 개요

1. 회부경위

【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495) 】

가. 제 안 자 : 정진철 의원(권영희 의원 외 9명 찬성)

나. 발의일자 : 2019년 3월 26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3월 29일

【 최웅식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512) 】

가. 제 안 자 : 최웅식 의원 외 9명

나. 발의일자 : 2019년 3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4월 3일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495) 】

가. 제안이유

-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악화, 특히 청년 실업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서울시와 그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은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상가점포 중 수백 개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이 국가적·사회적 실업 문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동참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망각하고 복지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청년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꿈과 희망을 줘야 하며, 현 시대 최고의 ‘공공의 선’은 단연 ‘일자리’임. 이에 서울시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점포를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른 미취업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무상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게 하여 의지가 있고 재능 있는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지원,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서울시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점포를 미취업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무상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5조제3항).

【 최웅식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512) 】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18.12.4.)됨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이 창업을 위하여 서울시 공유재산을 이용할 경우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대부료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미취업 청년이 창업을 위하여 서울시 재산을 이용할 경우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대부료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3조제3항).

Ⅱ.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495)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의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점포를 미취업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무상 또는 최소한의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나. 서울시 산하기관의 점포 현황

- ‘점포’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전시, 판매 등 상행위를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을 의미하며,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서는 상가의 일부로서 임대의 목적물이 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음(제2조제4호).
-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공기업 5개, 출연기관 18개)이 소유하거나, 대행·민간위탁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점포로는 지하도상가와 지하철역 구내상가가 있음.
 - 지하도상가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를 대행하고 있으며, 현재 총 25개소의 상점가 대부분을 공단이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일부만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음.

<서울시 지하도상가 현황>

('19년 2월 기준)

연번	상가명	점포	계약기간	대부료 (백만원)	수탁자 (또는 임차인)	공실 수
	계	2,788	-	39,970	-	
1	을 지 로	216	'11.11~22.05	1,012	(주)대현프리몰	6
2	시 청 광 장	53	'11.08~22.01	332	(주)대현프리몰	
3	을 지 입 구	66	'18.02~23.01	300	(주)을지입구쇼핑센터	
4	인 현	20	'17.10~22.10 등	52	공단직영	
5	신 당	98	'17.10~22.10 등	90	공단직영	1
6	종 각	81	'11.11~22.04	925	종각지하도상가상인연합(주)	
7	종 로 4 가	112	'17.08~22.07 등	122	공단직영	3
8	종 오	66	'18.05~23.05	592	㈜깨움	
9	청 계 5 가	45	'18.02~23.01	117	(주)청계5가쇼핑몰	
10	청 계 6 가	49	'13.02~23.02	186	(주)청계6가지하쇼핑센터	
11	마 전 교	32	'18.02~23.01	64	종로5가마전교지하쇼핑타운(주)	
12	동 대 문	62	'18.06~23.06	517	(주)동대문지하쇼핑센터	
13	청 량 리	6	-	-	-	
14	명 동	61	'18.02~23.01	1,015	(주)명동지하쇼핑센터상인회	
15	소 공	150	'18.08~23.08	971	(주)소공쇼핑센터	
16	명 동 역	70	'11.09~22.01	805	명동역지하도상가상인연합(주)	
17	회 현	225	'18.03~23.02	722	(주)회현지하쇼핑센터	
18	남 대 문	99	'19.01~24.01	341	(주)남대문지하도상가상인연합	
19	강 남 역	212	'09.07~20.05	6,858	(주)강남역지하쇼핑센터	
20	잠 실 역	139	'18.09~23.09	3,795	정00	
21	잠실지하광장	15	'17.01~22.01 등	3,023	(주)코리아세븐 외	
22	터 미 널	620	'10.02~21.03	14,050	(주)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	
23	영 등 포 역	80	'09.11~20.06	1,339	(주)영등포역쇼핑센터	
24	영등포로타리	133	'18.07~23.06	2,610	(주)영등포로타리지하쇼핑센터	
25	영 등 포 시 장	78	'18.02~23.01	132	(주)영등포시장지하쇼핑센터	

- 지하철역 구내상가는 서울교통공사가 역사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하였으며, 현재 총 1,819개의 상가를 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음.

<지하철역 구내상가 현황>

(‘19년 2월 기준)

계	개별 상가	네트워크 상가									복합 상가	GS 상가	소송	공실
		계	편의점	화장품	식음료	의류	제과	액세서리	스포츠	플라워				
1,819	512	385	157	55	49	50	27	32	5	10	222	406	102	192

- 최근 온라인 거래의 확대와 대형쇼핑몰의 등장 등으로 지하도상가와 지하철역 구내상가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공실이 증가하는 등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임.

다. 미취업 청년 창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안 제5조제3항)

- 개정안은 일자리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에서 관리하는 점포에 입주한 미취업 청년 창업자에게 무상 또는 최소한의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청년창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서울시 지하도상가와 지하철역 구내상가에서 일부 점포가 공실로 방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 창업자의 입점이 침체된 상가의 활력을 제고하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서울시 지하도상가와 지하철역 구내상가의 공실 현황>

(‘19년 2월 기준)

	소유	점포 현황	공실현황
지하도상가	서울시	25개 상가, 2,788개	3개 상가, 10개 점포
지하철역 구내상가	서울교통공사	총 1,819개	192개

- 다만,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점포는 서울시의 재산인 경우(지하도상가)와 산하기관의 재산인 경우(지하철역상가)로 구분되며, 무상 임대를 조례로 허용한다면 관계법령의 위반 논란이 각각 발생하게 됨.
- 우선, 서울시 소유의 점포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붙임 1 참조)에 따라 미취업 청년이 창업에 이용하는 경우 50% 범위에서 대부료와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무상 임대와 시행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임대료 감면은 불가능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허가기간, 대부료·사용료 요율과 산출방법, 감면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점포가 산하기관의 소유인 경우 시장이 무상임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한다면, 법령에 위임없이 지방공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최근 일부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 조례에 담긴 공사·공단 자산에 대한 단체장의 무상사용 규정이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공사·공단의 재산권 침해라는 법제처의 의견¹⁾에 따라 개정된 바 있음.

<시장의 무상사용 규정 관련 조례 개정 현황>

안건명	발의일	공포일	소관 상임위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08-16	2017-09-21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08-16	2017-09-21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아울러,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승차 제도 등으로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2018년 5,390억원 적자)에서 지하철역 구내상가의 임대료를 서울시에서 감면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 적자폭을 가중시킬 수 있음.
- 이처럼 산하기관의 점포를 미취업 청년 창업을 위해 무상 또는 최소한 임대료로 감경을 규정한 개정안은 공유재산 관계 법령의 위반 논란과 함께 산하기관의 재정 부담을 야기하므로 심도있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1)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2014년(붙임 2 참조)

【 최웅식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512)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이 창업을 위해 서울시의 재산을 이용할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부료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나. 서울시의 창업보육시설 운영 현황

- 서울시는 지역별 또는 산업분야 별로 다양한 창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청년을 대상으로만 하는 별도의 창업정책과 사업은 실시하고 있지 않음.
- 현재 창업보육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시설들은 총 27개²⁾이고, 이 중 서울시가 직접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19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산업진흥원이 6개, 서울디자인재단이 2개 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시설 현황은 붙임 3 참조).
- 이들 창업보육 시설들은 창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간 이용료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시중가격보다 낮게 받거나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2)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보도자료(2019.4.4), “서울시, 글로벌 TOP 5 창업도시로 가는 패스트트랙을 만든다.”

- 일례로 산업진흥원의 시설들을 살펴보면, 서울 창업허브 등은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고 DMC첨단산업센터와 DMC산학협력센터는 내부규정³⁾, 성수IT종합센터는 내부 방침⁴⁾에 근거해 임대료를 산정·부과하고 있음.

<산업진흥원의 창업보육 시설 운영 현황>

시설명	입주기업수 (개)	입주면적 (㎡)	18년 임대료 총액(천원)	임대료 산정기준	운영방식 (시설소유)
SBA엑셀러레이팅 센터(강남)	12	376	150,975	66,550원/㎡	자체운영 (민간)
서울글로벌비즈니스 센터(종로)	13	52	없음	-	민간위탁 (서울시)
서울글로벌비즈니스 센터(강남)	3	15.9	없음	-	민간위탁 (민간)
서울창업허브	144	15,747	없음	-	민간위탁 (서울시)
서울유통센터	20	3,014	165,794	4,050원/㎡	자체 운영 (서울시)
DMC첨단산업센터	74	61,335	4,471,337	6,650원/㎡	자체 운영 (서울시)
DMC산학협력센터	52	25,601	962,488	6,650원/㎡	자체 운영 (서울시)
성수IT종합센터	14	4,158	226,463	4,400원/㎡	민간위탁 (민간)
웹툰파트너스	20	199	없음	-	자체 운영 (서울시)
서울파트너스하우스	27	495	없음	-	자체 운영 (서울시)
서울게임콘텐츠센터	70	3,439	없음	-	자체 운영 (서울시)

3) 「DMC 지원시설 운영규정」 제27조(입주부담금의 부과) ① 센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 등 입주부담금을 각 호와 같이 부담하며,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요율 및 임대료 인상률을 감안하여 주변시세의 50%를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와 서울시의 승인을 통해 결정한다.

4) 성수 IT앵커시설 설치·운영 기본방침('10.11.24)에 따르면 서울시 지원 창업보육시설에 준하여 책정하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 소유 재산(행정재산·일반재산)은 공유재산 법령상 임대료(대부료·사용료) 감면의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 임의대로 상이한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창업지원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령과 조례에 맞춰 임대료 관리 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입주기업의 무상임대에 대한 법률자문결과에 따르면, 입주기업에 대한 공간제공은 공유재산 법령이 적용되며 법령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임대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법률자문의뢰 결과>

구분	자문의견
시의회 입법·법률고문 1·2·3	서울시의 공유재산인 창업보육 시설에 입주한 창업자의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적용되며, 법령에 감면 사유가 없으므로 입주자에게 임대료(사용료·대부료)를 부과하여야 함.
서울시 법률자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창업기업에 보육공간의 제공 등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 경우 공유재산을 창업보육 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가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창업자가 창업보육 시설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의 수혜 중 하나에 불과하며 공유재산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무상 임대가 가능함.

다. 미취업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대부료·사용료 감경(안 제13조제3항)

- 그 동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해 공동으로 건물(일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였음⁵⁾.

- 최근 정부는 공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주면서 임대료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였음(2018년 12월 4일 공포).

<미취업자들을 위한 공유재산 지원제도 변경 현황>

구 분	개 선 前		개 선 後
행정재산	- 수의계약 대상 × - 사용료 감경 대상 ×	➔	- 수의계약 대상 ○ - 사용료 감경 대상 ○
일반재산	- 수의계약 대상 ○ - 대부료 감경 대상 ×		- 수의계약 대상 ○ - 대부료 감경 대상 ○

※ 세부적인 조문은 붙임 1 참조

- 아울러, 임대료를 최대 50% 범위에서 조례로 감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조례 개정기간을 고려해 부칙에서 시행령 공포 후 6개월부터로 적용 시점(2019.6.5)을 정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장은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해 사용료와 대부료를 50% 감면하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제286회 회기에 제출하였음(2019.3.29.).
- 개정안은 시행령 중 미취업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관계법령의 개정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서울시의 높은 임대료를 고려하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고 기대됨.

5) 종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 다만, 예비 창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유재산 중 유휴 공간과 임대료 수준 등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홍보하는 행정이 병행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또한, 개정안은 시행령에 따라 50% 이내로 감면율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상의 구체적인 감면율을 명시해주는 것이 입법의 명확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참고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음(4.22).

담당조사관	연락처
김성만	02) 2180-8055

Ⅲ. 붙임자료

<붙임 1>

- 미취업 청년 창업자 공유재산 활용 지원 관련 개정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26

지방공사 운영의 자율성 제고

조례내용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사의 재산권 행사 제약

II. 개선방안

-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공사의 재산을 시장이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장의 공사 재산 무상 사용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사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 제고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 창업보육시설 현황〉

소관부서	기 관	소 재	지원대상	비 고	
경제 정책실 (11)	투자 창업과 (9)	서울창업허브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예비·초기·성장기업 ▪ 기술기반창업 전반	▪ 입주: 450 ▪ 규모: 23,659㎡ ▪ 개관: '17.6월
		성수IT 종합센터	성동구 (성수이로 22길 37)	▪ 예비·초기·성장기업 ▪ IT, IoT 기업	▪ 입주: 33 ▪ 규모: 9,909㎡ ▪ 개관: '11.7월
		서울 글로벌창업센터	용산구 (청파로 109)	▪ 예비·초기기업 ▪ 정주외국인·유학생	▪ 입주: 46 ▪ 규모: 2,737㎡ ▪ 개관: '16.8월
		서울 창업성장센터	성북구 (화랑로 14길5)	▪ 성장기업 ▪ 첨단산업(바이오, IT 등)	▪ 입주: 20 ▪ 규모: 1,166㎡ ▪ 개관: '12.9월
		서울 창업디딤터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 예비·초기기업 ▪ 기술기반창업 전반	▪ 입주: 30 ▪ 규모: 2,547㎡ ▪ 개관: '14.5월
		청년창업꿈터	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11-3)	▪ 예비·초기기업	▪ 입주 : 8 ▪ 규모 : 390㎡ ▪ 개관: '17.11월
		서울 애플비즈니스센터	마포구 (매봉산로 31)	▪ 예비·초기기업 ▪ 인터넷·모바일앱 기업	▪ 입주: 35 ▪ 규모: 1,224㎡ ▪ 개관: '16.4월
		서울글로벌센터	중구 (종로 38)	▪ 예비·초기기업 ▪ 정주외국인	▪ 입주: 13 ▪ 규모: 711㎡ ▪ 개관: '08.1월
		강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강남구 (영동대로 513)	▪ 예비·초기기업 ▪ 정주외국인	▪ 입주: 3 ▪ 규모: 122㎡ ▪ 개관: '10.5월
	경제 정책과 (2)	양재 R&CD 혁신허브	서초구 (태봉로 114)	▪ 예비·초기·성장기업 ▪ AI, 딥러닝기업	▪ 입주: 12 ▪ 규모: 2,900㎡ ▪ 개관: '17.12월
		서울핀테크랩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예비·초기·성장기업 ▪ 금융, 핀테크기업	▪ 입주: 27 ▪ 규모: 592㎡ ▪ 개관: '18.4월
산업 거점 조성반 (1)	서울 바이오허브	동대문구 (회기로 117-3)	▪ 예비·초기·성장기업 ▪ 바이오, 의료기업	▪ 입주: 5 ▪ 규모: 3,729㎡ ▪ 개관: '17.10월	
도시 농업과 (1)	서울먹거리 창업센터	송파구 (양재대로 932)	▪ 예비·초기·성장기업 ▪ 농식품업	▪ 입주: 22 ▪ 규모: 1,547㎡ ▪ 개관: '16.12월	

소관부서		기 관	소 재	지원대상	비 고
서울산업 진흥원 (6)		신기술 창업센터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초기·성장기업 기술기반창업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39 규모:9,270㎡ 개관:'95.9월
		DMC 첨단산업센터	마포구 (매봉산로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성장기업 IT,지식산업,연구개발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33 규모:77,190㎡ 개관:'08.10월
		A-센터/산학협력센 터	마포구 (매봉산로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초기·성장기업 기술기반창업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17 규모:1,086㎡ 개관:'16.9월
		A센터 강남점	강남구 (삼성동 15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성장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10 규모:1,369㎡ 개관:'18.3월
		게임콘텐츠 센터	마포구 (성암로 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초기·성장기업 게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18 규모:1,978㎡ 개관:'09.12월
		애니메이션 센터	중구 (소파로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초기·성장기업 애니메이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9 규모:7,080㎡ 개관:'99.5월
서울디자인 재단 (2)		DMC 창업센터	마포구 (성암로 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초기기업 디자인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45 규모:3,531㎡ 개관:'08.10월
		패션창작 스튜디오	중구 (을지로 45길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초기·성장기업 패션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34 규모:2,330㎡ 개관:'09.12월
여성 가족 정책실 (8)	여성 정책과 (6)	여성창업 보육센터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초기기업 여성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30 규모:388㎡ 개관:'09.4월
			강남구 (도곡역사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15 규모:743㎡ 개관:'13.4월
			금천구 (독산로 50길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18 규모:1,200㎡ 개관:'02.3월
			노원구 (동일로 207길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22 규모:810㎡ 개관:'11.10월
			마포구 (토정로 35길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17 규모:362㎡ 개관:'11.1월
		서울여성 공예센터 (더 아리움)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52 규모:5,723㎡ 개관:'17.5월